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6. 10.(금)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5월 30일에 있었던 제30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6월 8일에 있었던 제31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는 사실관계의 확인과 위법성 판단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인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임의적인 감경 사유 추가, 또 대규모유통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의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의의결제의 도입입니다. 방통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방안 등을 마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이용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절차 개시의 타당성을 심사해서 개시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의의결 전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 및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의결을 해서 동의의결을 결정하게 되며, 다만 사실관계의 변경, 사업자의 거짓 정보 제공 등의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용자보호업무의 평가 그리고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은 우리 위원회 고시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감경 사유 규정에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이용자 보호 활동'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5,000만원,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전기통신사업법과 다르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차등 부과 규정을 신설해서 양 법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터넷방송사업자·채팅앱 운영자 등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됨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더라도 현재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의 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부모의 교육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지금 첫 번째로 올라가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안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공정위나 다른 입법례는 있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이것을 주요정책 과제로 보고하고 그 후속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2가지 정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점점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을 남용하게 된다면 이것이 제재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 또는 심의대상인 전기통신사업자는 누구든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처벌 회피수단으로 동의의결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위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에 CJ, 롯데 등 국내 3대 메이저 영화사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거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의의결에 따른 보상규모가 이용자의 실제 피해를 만회하는데 크게 부족한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지난해 시민단체의 신고로 진행된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동의의결 심의 과정에서 보면 그 피해 보상을 위해서 이통3사는 약 2,600억원 가량의 음성과 데이터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통사가 제공하는 피해보상 규모는 30분에서 60분의 음성통화와 무료데이터 쿠폰으로 이로 인한 이통사의 비용 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이통사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은 음성통화 초과 과금 분에 대한 환급액으로 SKT 1억원 등 3사를 합해도 총 8억원 정도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동의의결제의 성패는 우리 방통위가 동의의결 신청 수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본 제도가 처벌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들의 시정방안이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에 충실히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의 개정안 처리와 더불어서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동의의결 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 또 우리나라 국내 입법례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동의의결 제도를 얼마만큼 피해자 구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인가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법률개정안이기에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제도를 경미한 사건에 많이 허용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한 사건입니까?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대체로….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물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용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위법 행위를 해 놓고 사후에 이렇게 수습하고 시정조치를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조사·처벌을 면해 달라 이런 취지인데….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위법성 판단으로 인정이 되면 결국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밖에 없고, 나머지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이용자가 물론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앞서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개시 여부 결정 시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또 나중에 동의의결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피해구제가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잘 판단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 것을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할 지도 봐야겠지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 위원회에서 개시 여부와 동의의결 여부를 다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형사법에서 일종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입니까? 그런 제도와 유사한 것일 텐데 부작용,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국회에서도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이 있지요? 5페이지를 보시면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을 법정대리인이 '나는 괜찮다. 미성년자이지만 나는 허용하겠다'면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도 문제의 소지는 요새 부모를 이기는 미성년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가정 문제에 대해서 법제가, 국가가 많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런 것은 가정 문제에 맡겨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면 부모가 '나는 그것 적용받지 않겠다. 허용해 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한 강제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서 저는 부작용이 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항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통사에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일선 유통점에서 사실상 이에 대한 제재 근거도 없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 설치하였다 할지라도 스스로 삭제하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일부 언론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으로도 발의가 되었습니다만 국회에서조차도 청소년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와....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여기 나오는 예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청소년에 대한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부모 등이 허용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부모의 교육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인데 자유주의자들, 자유교육을 중시하는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들이 부모를 졸라서 이런 것은 안 막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인 법 적용에는 맞지 않고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예상하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지만 지금 가정교육이나 사회 풍조로 봤을 때 이런 여유를 둬으로써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개정법률안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예. 개정안은 그대로 진행하는데 여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신설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을 입법 개정안에 넣게 된 경위가 있지요? 여러 단체에서 청소년 사생활의 자유가 너무 강제적으로 억압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라든지 또는 청소년도 나이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인데 그런 자료들을 다시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한 부작용이 혹시 생겼을 때 대응까지 넓게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시행이 될 때 그런 문제점들이 부각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동의의결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의결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역시 남발될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자가 피해구제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신청할 경우가 많을텐데 3페이지 효력에 보면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누구든지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법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소위 개런티를 해 주는 것인데, 법 위반을 한 사실이

명백히 있고, 다만 피해구제를 더 우리가 신속하게 해 주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문에 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위법성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통해서 의결할 때 위법성 판단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전에 사건을 종료하기 때문에 위법이나, 아니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론을 안 낸다는 의미의 효력입니다. 만약에 이 피해구제 방안이 적합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취소사유에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 심의를 다시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여기에 굳이 효력에 이 조항을 명시하게 되면 누구든지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서 법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피해구제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민사소송으로도 갈 수 있을 텐데….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결정과 별개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효력에 이렇게 너무 불문에 붙인다는 식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불문에 붙인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동의의결을 하면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 판단을 유보하고 동의의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의의결이 있었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피해자 구제방안이 나왔다고 해서 이 사업자의 의견이 무조건 위법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법원에서 별도로 위법인지 아닌지 다시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남발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어떤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세부적인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시행령에 담을 내용이라도 모법인 상위법에 그런 정신을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신청요건을 엄격하게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의를결의 확정시기 문제인데 피해구제를 약속하고 동의를결을 신청했을 때 우리가 확정되기까지의 절차상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고 감시해서 확인한 다음에 동의를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 동의를결하기 이전에 완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조사 심의하는 도중에도 피해구제가 일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사실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구제 방안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진행 중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계획을 제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동의를결한 이후에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저희들이 또 취소를 하고 조사 심의를 다시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행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사업자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동의를결을 신청하고 우리는 계획을 보고서 동의를결해 주는데, 이렇게 된 뒤에 사업자가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본의 아니게라도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과연 사후에 점검을 해서 동의를결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미리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물론 개정안이나 시행령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하위법령에서 고려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용 여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른 사항과 달리, 특히 이용자 피해구제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 계획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재수위에 상응해야 합니다. 만약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에 부과해야 할 과징금이 있다면 과징금에도 어느 정도 상응할 정도에, 물론 그것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또 기본적으로 제재 수준에 상응해야 합니다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취지가 아니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개정안 제52조의3제5항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일단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엄격하게 운영해야겠지요. 피해구제 방안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여기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고 조문은 되어 있지만 반드시 취소를 해서 거기에 또 이후에 다시 제재를 정당하게 가해야 하는 절차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옆에서 메모 받은 것이 있는데 추가 답변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내용일 것 같습니다. 불이행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아까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예외, 이것은 청소년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문화는 또래, 친구들과의 접촉, 교류 아니겠습니까? 예외를 적용받은 폰을 가진 청소년이 주변 친구들과 그 불법유해정보를 공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에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외를 신청한 학부모가 책임져야겠지요. 그 예외를 원치 않는 학부모의 자녀에게 불법유해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나누어 보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가정교육을 침해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보완을 해서 해야지, 그냥 예외적용을 해 나가면 법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뜻입니다. 무용화된다는 취지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설치한 사람과, 그다음에 부모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해서 설치하지 않은 사람 간의 공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예를 들면 학교의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예외적용을 받는 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폰을 다른 클래스메이트에게 보여주고 공유하는 경우를 예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청소년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부모들은 불만이지요. 아닌 말로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진짜 원치 않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예외적용을 받아서 그 반에서 다 나누고 공유한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문화 접촉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면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제한규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들끼리 토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 개정안에 그것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용을 받은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의 학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또 다른 법에서 책임문제를 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른 법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가령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아닌 말로 과징금을 물리든가, 아니면 제재규정을 두어야지….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그로 인해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별도의 사적인 법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 김재홍 부위원장

- 법적 구제절차를 따로 가져야 한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에 사업자처럼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 균형성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개정안을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입법예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결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 또 외부에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향후 의결할 때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논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개정이유 맨 밑에 보면 ‘과징금 부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임의적 감경 사유 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주요내용의 어느 부분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과징금 감경 사유 추가에 <2>번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앞에 ‘임의적 감경 사유’ 그 말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법에 필수적인 가중 감경이고, 그다음에 임의적인 감경….

○ 이기주 상임위원

- 제53조제3항을 보면 과징금 산정할 때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저희들 고시에는 더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인 법에는 이것을 일반화된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제53조제3항에 보면 과징금 산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쪽 열거가 되어 있는 것에 이번에 두 가지를 추가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저는 개정이유에 ‘과징금 부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임의적 감경 사유 추가’ 이 표현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징금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이 두 가지 사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과징금 부과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든지 임의적이라는 말이 법률개정안에 적절하냐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사실은 고시에 들어가 있는 감경 사유가 사실은 상위법에 명백하게 근거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그렇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상위법에 명시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고시에 그렇게 임의적 가중 감경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인 법률에 그것을 더 명확하게 추가하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런 의미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신뢰성 제고’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바꿉시다. 마치 그 전에는 과징금 부과 신뢰성이 더 낮았던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니까 ‘신뢰성 제고’라는 표현을 오히려 임의적 감경 사유를 더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런 표현으로 정리하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취지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것대로 일단 저희가 마련한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더 논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른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LGU+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잠시만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것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주에 있었던 LGU+ 단말기유통 조사 위반에 따른 사실조사 거부라고 해야 할지, 방해라고 해야 할지, 그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사안이 기타 논의사항으로 논의할만한 사항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언론의 관심과 사상 초유의 사실조사 거부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보다 그저께 저희 다섯 분의 위원님들 간의 티타임에서도 논의한 것처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티타임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하려면, 준비하신 자료가 있다면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 고삼석 상임위원

- 잠깐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제가 잠깐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은 6월 1일부터 조사가 시작된 LGU+의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1일, 2일에 있었던 거부행위에 관해서 말씀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 거부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사실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거부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을 지은 다음에, 저희들이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방안을 따로 논의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LGU+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와 함께 논의를 할 때 할 것 인지를 먼저 논의하고 난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우선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위원장님 귀국 직후 화요일 날 티타임 할 때...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 고삼석 상임위원

-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는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저께 저희가 또 논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하든지...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때는 제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LGU+ 사실조사 거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 본질에 대한 논의보다는 위원장님 출장 중에 부위원장님께서 주재했던 위원들 간담회, 그리고 기자 브리핑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서...

○ 최성준 위원장

- 다음 주까지 꼭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조사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다시 또 긴급하게 회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난 티타임 진행이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제22조제1항을 보면 조사거부라는 것은 거부, 방해, 기피 등 유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부인지 방해인지 기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논의하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뭘니까? 우리 조사관들이 LGU+ 본사에 갔을 때 그 현장의 LGU+ 법무실 임직원들이 일단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를 보면 조사관들이….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언론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실을 특정해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이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누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저쪽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론보도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보도가 아니고 사실조사를 사업자가 거부했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저희의 입장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입장이 나오려면 사실관계가 먼저 명확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저희 입장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사실상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에 대해서는 LGU+ CEO와 오찬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조사에서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기발령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식사 자리 자체가 부적절했나? 아니면 식사 자리에서 어떤 발언이나 어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느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팩트가 확인됐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에 대해서만 먼저 선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본인이 만난 것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과 본인의 이야기와는 만나게 된 경위에서부터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수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런 문제가 제기된 사람이 조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사 라인에서 일단 배제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이 따로 있고, 그 단의 단장을 이용자정책국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단장 지휘 하에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이렇게 줌...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도 기회를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기주 위원께서 6월 7일 화요일 날 티타임에서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본질 문제인 LGU+의 사실조사 거부 문제가 논의됐고, 원만하게 그것에 대해서 토의했더라면 오늘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LGU+의 사실조사 거부, 그 본질 문제는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불을 끄기 위해서 가졌던 상임위원들의 긴급 간담회와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공격시비만 있었지, 본질에 대한 토론은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저희가 보고받은 이 자료는 5월 30일자 이통3사의 시장 과열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팀이 사전 점검한 것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이었습니다. 그때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두 달 반이 지난 뒤에 5월 30일에야 처음으로 ‘사실조사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를 저는 지난주에 기자들의 질문 공세와 답변 요구를 들으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위원장 해외출장 중에 부위원장 당신이 책임자 아니냐?’ 하는 것과 방통위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신과 권위 문제, 공무 수행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긴급 간담회를 안 할 수 없었는데 언론 기자들의 질문은 국민의 대표는 아닐지 모르지만 일부 국민이라도 대신한 질문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답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언론을 그냥 따라가냐? 언론에 휘둘리냐? 이런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2차 조사 3월 15일부터 5월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이 상임위원들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고 그냥 두 달 반 이상 연기됐는지가 의심이었습니다. 6월 1일 우리 조사팀이 LGU+ 본사에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진입을 못 했지요. 6월 1일 저녁부터 일부 기자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사태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했고 좀 알아 봐야겠다”, 6월 2일도 오전에 조사팀이 갔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언론의 질문 공세와 답변요구와 방통위의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한 압박이 빗발쳤습니다. 저는 6월 2일 오후 낮에 “방통위가 갖고 있는 직무, 직권은 조사 거부, 이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인데 거부를 계속하면 나중에 심결 때에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6월 3일 아침 출근길에 또 계속 언론들의 질문 공세, 전화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다른 상임위원들과 상의하고 답변을 드리든지 하겠다”고 와서 바로 상임위원님들 네 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태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3시에 댈까? 다들 한 번 알아봐라, 오후 3시에 이기주 위원은 “외부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러면 10시 반 어떠냐?” 10시 반에도 이기주 위원만 못 온다, 그러면 이것의 성격은 공식 티타임이 아닙니다. 긴급 간담회, 가능한 상임위원만이라도 모여서 이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언론의 요구에 대해서 설명, 답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부위원장이 대표로 기자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가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위원장실 비서관에게 일부러 “오라고 해라”고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 경황이 없어서도 유럽에 가 있는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 협의를 못 한다. 비서실에서 알아서 정리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기주 위원도 국내에 있는데 안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도적인 합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세 사람의 상임위원이 의견을 모아서 그냥 언론에 설명하고 불 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식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정말 엄중한 대통령의 해외 정상 외교 수행 중인 위원장에게 전화해서 사전 보고하고 협의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반이면 유럽, 프랑스 시간은 2시 반, 3시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비서실에서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진짜 문제가 있다? 위원장이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부위원장에게 능동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이 꼭 먼저 전화해서 사전 보고하고 협의해야 합니까? 이기주 위원은 “어떤 부처의 차관이 해외 출장 중인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고 대외에 발표하느냐?”, 그것은 결정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였고,

여기가 장·차관이 지배하는 독임제 행정부처입니까? 저는 부위원장으로 최소한의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제 개인적인 무능함과 무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통위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위신과 권위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티타임도 아니고 가능한 상임위원 세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언론에 설명한 것입니다. 언론의 본질적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사상 초유로 이통사가 조사를 거부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방통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위원장이 책임자 아닙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6월 3일 아침까지도 LGU+가 정상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 10시 반에 LGU+가 사무처에 와서 “우리를 단독조사하는 근거자료를 보여 달라. 그것을 열람한 뒤에 조사에 응하든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사팀장인 신종철 과장은 간담회장에서 우리가 보자고 했지만 오지 못하고 LGU+ 측을 열람시키면서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통위 내부에 있는 상임위원들이 긴급히 움직이지 않았으면 LGU+가 그때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정상적으로 조사에 응했을 텐데 왜 부위원장이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심지어는 “위원장 부재 시에 월권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부위원장이 그냥 장식품입니까? 위원장의 해외 출장 중에 그 역할 분담이라도 해서 안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무시하면서 위원장 부재중에 부위원장이 할 필요도 없는 짓을 월권하면서 했다? 저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질 문제, 왜 LGU+가 정말 우리 이통시장 사상 초유로 규제기구인 방통위의 근거 있는 사실조사를 거부했는가? 그 배경이 뭔가에 언론의 질문과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은 정말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왜 그렇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LGU+, 어디 믿는 구석이 있기에 누구를 믿고서..., 이것이 다 전 주에 나온 언론보도의 끝자락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일은 누가 저질러 놓고 그냥 앉아있으면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되는 부위원장에게 불 끄는 일을 했다고 해서 월권을 했다? 불편한 짓을 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정말 이것은 경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비난 공세를 티타임에서, 물론 비공개 회의입니다만 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의 근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의 직무수행과 그 직권에 대해서 시행세칙을 제정해야 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부위원장님께서 무엇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드린 것은 부위원장님이 하신 전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국내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뿐만 아니고 비록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전화로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제 의견은 왜 물어보시지 않았느냐는 그 절차를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 업무에 대해서 왜 그것을 하셨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위원장님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느냐? 나는 그것 못 한다”라고 말씀하시어서 그 부분에서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전화를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안 하셨다고 해서, 그것은 오해를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은 기자브리핑을 하셨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저희 상임위원 간의 간담회였는가를 여쭙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공식적인 간담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인 간담회면 “최소한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그 간담회를 소집하시는 분께서 간담회를 소집한다는 것을 말씀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부위원장님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왜 업무를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한마디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식적인 간담회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일반적인 사적으로 모여서 위원들끼리 차 마시는 자리냐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간담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긴급 간담회라고 했을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긴급 간담회도….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잠깐….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지금 설명 중입니다. 긴급 간담회라고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비서관은 저에게 티타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잘못 전달했을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티타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잘못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10시 반에 티타임을 부위원장님께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나중에 발언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긴급 간담회라고만 이야기했고, 저는 용어를 분명히 가려서 씁니다.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 간담회를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국내에 계신 이기주 상임위원이 참석했으면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LGU+의 사실조사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와서 나는 반대한 근거가 무엇이라고 설명했으면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제가 LGU+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반대했다고요?

○ 김재홍 부위원장

- 들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무슨 그런 말씀을 이런 데서 하십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발언 중인데 또 하나....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사무처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고 의견을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아무 이야기나 그냥 막 하면 되는 것입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 두 분 다 진정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꼭 전체회의에서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도 운영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공식성이 있느냐? 이기주 위원에 참여했으면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 간담회에 가서 기자들이 여러 차례 “이것이 방통위의 공식 입장이나?, 합의 결정한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공식 결정 아니다. 제도적인 의미에서 절차상의 합의 결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합의 결정은 티타임에 다섯 사람이 다 모여도 거기에서 합의 결정을 못 하는 것이지요. 합의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아니라고 설명했다니까요. 언론에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런데 어떤 언론은 “이 엄중한 상황에 견주어 볼 때 단호한 의지 표현 없이 문제 덮기에만 급급한 모양새 같다” 김재홍 부위원장 이름을 박아서 그런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제가 “이것은 위원장이 귀국한 뒤에 5명의 상임위원이 다 모여 앉아서 논의하고 합의 결정할 것이다. 저는 지금 법적으로 따진다면 위원장을 직무대리할 부위원장인데 그렇게 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 사람이 의견을 모은 것은 그냥 의견을 모아서 대언론에 설명하고 지금 긴급 조사 거부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위원장이 그냥 세 사람의 상임위원 의견 모은 사람들의 대표로 언론에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것은 합의 결정이 아니다. 방통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5명이 모여서 결정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문제이고, 더군다나 위원장께서는 이것은 월권이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한 번도 월권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연락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 김재홍 부위원장

- 연락을 안 드리기는, 아까 공식 결정 같으면 연락을 드리지만 3가지 이유로 이것은 위원장에게 보여줄 필요 없다….

○ 최성준 위원장

- 상임위원 간담회를 하는데 저는 상임위원 아닙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외부에 나가 있는데 중대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비서실에서 보고를 했으면….

○ 최성준 위원장

-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상임위원 긴급 간담회를 소집하신 것 아닙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긴급 간담회는 그냥 불 끄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언론에도 이것은 합의 결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외 출장 중인 밤 2시, 3시에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 전화를 해야 합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보고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사전 협의, 전화를 드려야 합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저에게 전화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계속 같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쓰는 내용이나 용어나,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중에 제가 LGU+에 대한 사실조사를 반대했다는 그 말씀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누구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여기에서 빨리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사태는 벌어졌고, 지금 담당 책임자는 대기 발령 중입니까? 대기 발령할 때도 상임위원들과 상의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 책임자를….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언제 인사를 일일이 다 상의해서 결정했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그냥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LGU+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문제는 조사가 끝난 뒤에 하자….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조사 끝난 뒤에 하자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심사 뒤에, 일정한 조사 뒤에….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오히려 부위원장님께서 기자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지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오면 그것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앞서 나가시면서, 제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빨간 선글라스 쓴 사람한테 모든 것이 다 빨강계 보이듯이 자꾸만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니까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는 빨간 선글라스를 잘 안 씁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간단하게….

○ 최성준 위원장

- 다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5분 폐회 】